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본원칙에 ‘이중돌봄 상황’ 추가〉

■ 정춘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3797호)

2026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신 은 호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2

I. 개요

1.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3797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정춘생의원 등 11인

(2) 제 안 일 : 2025. 10. 29.

(3) 회 부 일 : 2025. 10. 30.

나. 제안이유

초고령화 시대, 만혼 시대,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,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, 장애형제,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‘이중돌봄’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.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,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제1항).

Ⅱ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장애인의 심신상태, 생활환경 및 욕구뿐만 아니라, ‘이중돌봄 상황’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제1항).

현행	개정안
제2조의2(기본원칙)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,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	제2조의2(기본원칙) ① ----- ----- ----- <u>욕구와 부양의무자의 이중돌봄(자녀·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·조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의 질병, 장애, 사고,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돌이상 돌보는 것을 말한다)</u> 상황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2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서는 ‘이중돌봄’을 “자녀·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·조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의 질병, 장애, 사고,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”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음.

다시 말해 이중돌봄은 복수의 돌봄 책임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포괄함.¹⁾

- 예컨대, 부모 돌봄과 자녀 돌봄,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형제·자매 돌봄, 장애 부모와 자녀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.

-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장애인의 심신상태, 생활환경 및 욕구 외에도,

부양의무자의 ‘이중돌봄 상황’을 고려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여, 장애인 가족이 겪는 복합적 돌봄 부담을 활동지원급여 산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이며,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.

- 서울·인천·경기 지역 가족센터, 어린이집,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8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, 현재 4명 중 1명이 이중돌봄 상황을 경험하였고, 향후 5년 내 약 40%가 이중돌봄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²⁾³⁾

1) 송다영. (2025). 이중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대응방안 모색. 이중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, 11-36.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.

□ 다만, 개정안에서는 ‘부양의무자⁴⁾의 이중돌봄 상황’을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 경우 그 적용 범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.

즉,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본인이 가족 등을 돌보는 경우는 고려되지 않으며, 비동거 가족이나 사실혼 관계 등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음.

□ 아울러,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량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4⁵⁾에 따른 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’에 따라 결정되고, 조사내용에 ‘이중돌

2) 송다영(2025). 이중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대응방안 모색. 「이중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」, 11-36.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.

3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이중돌봄 상황 및 장애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도 조사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.

4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부양의무자”란 수급자(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부양의무자의 범위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수급자(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(이하 “직장가입자”라 한다)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
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(이하 “지역가입자”라 한다)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

5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4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,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

2.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

3.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,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.

1.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

2.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·행동 등 장애특성

3. 신청인의 가구특성, 거주환경,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

4.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

5.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, 이하생략.

봄 상황'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,

개정안과 같이 기본원칙에 '이중돌봄 상황'을 명시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따라서 개정안의 취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사항 개편 등 후속 입법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참고로, 보건복지위원회에 '이중돌봄 상황'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「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정춘생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13801호)이 계류 중임.

3.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

가. 보건복지부

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량을 산정하고 있음.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4제2항에 따르면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, 장애특성 뿐만 아니라 가구특성, 거주환경,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

장애인 부양의무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기본원칙 조항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문 의 처
02)6788-5502